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방안

박승국



요 약

1. 서 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 왔음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협력관계 평가결과가 고시 수준 이상인 경우(2012. 12. 05. 삭제),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2014. 02. 06. 삭제), 공제조합의 재산상태 평가결과가 고시수준 이상인 경우(2002. 09. 18. 삭제) 등의 사유가 삭제되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것은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임
- 따라서 하도급법상에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불황과 건설 산업의 장기 침체가 맞물려서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의 문제점 및 개선에 따른 편의

(1)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미흡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014년 2월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면제를 폐지한 것은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하도급법상에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 분명 하다고 할 수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업체의 지급 불능시 연쇄 피해 발생

-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원사업자의 신용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는 원사업자가 부실화 될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뿐만아니라 자재·장비대금 및 경제적 취약 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요 약

- 전문건설업종별 노무비율을 살펴보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9.5%, 철근콘리트공사업 36.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37.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종 평균은 약 30%임

(3)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부도,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확보 어려움

- 하도급대금 채권은 압류나 가압류에 의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며 법정관리의 개시결정이후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하도급대금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짐

(4)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와 수급사업자의 계약보증 이행 간의 형평성 결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징후가 나타나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거부 시 하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싶지만,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청구 때문에 계속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5)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 폐지에 따른 편익

- 하도급지급 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참여할 경우의 편익(2,624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보다 큼

3. 결 론

- 지급보증이란 만일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바, 신용평가등급이 A0이상인 원사업자는 지급불능,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지급보증제도의 본래의 기능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규정인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제 8조제1항제2호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참여할 경우의 발생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와 지급보증에 의해 보호되는 평균 하도급대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호되는 하도급대금(2,624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큼

-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축소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함

목 차

1. 서 론	1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운용 현황	4
2.1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4
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 현황	6
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준 계약 현황	7
3.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의 문제점 및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8
3.1 신용등급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의 문제점	8
3.2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 폐지에 따른 편익 분석	17
4. 개선방안 및 결론	22
(부록) 종합건설 원도급 규모별 하도급 현황	24

1 서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수급사업자의 보호 및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왔음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 왔음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협력관계 평가결과가 고시 수준 이상인 경우(2012. 12. 05. 삭제),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2014. 02. 06. 삭제), 공제조합의 재산상태 평가결과가 고시수준 이상인 경우(2002. 09. 18. 삭제) 등의 사유가 삭제되었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주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면제기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정착에 부정적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대하여 축소해온 것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칭함)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둘째,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셋째, 법 제14조제1항제2호16)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금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것은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임
- 따라서 하도급법상에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하도급법을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고, 회사채 신용등급 A0 이상에 해당되는 원사업자 대부분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상 신용등급 면제대상 삭제기준이 그 법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대상 업체도 하도급대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신용등급은 사전에 조정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경제적 상황의 변동이나 해당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용평가 등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 건설산업의 안정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하부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와 그와 연관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로 건설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이 높아야 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는 발주자 측면에서도 목적물을 최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성하여 목적물의 성능과 품질을 만족시킴으로써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 뿐만아니라 건설공사에 참

여하는 수급사업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

-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불황과 건설 산업의 장기 침체가 맞물려서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면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운용 현황

2.1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도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예외사유는 법령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2.1>과 같음

<표 2.1>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

면제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7. 1. 1.][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8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 현황

-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총 29개 업체이며 <표 2.2>는 면제대상 29개 업체를 나타낸 것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는 2014년 23개, 2015년 18개, 2016년 24개 업체였는데 대체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7년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 기준이 시행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가 증가함
- 향후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면제 대상 원사업자 현황(기간: 2017.07 ~ 2018.06.)¹⁾

번호	업체명	번호	업체명
1	대림산업(주)	16	(주)포스코아이씨티
2	(주)대림코퍼레이션	17	포스코에너지(주)
3	롯데건설(주)	18	(주)포스코켄텍
4	삼성물산(주)	1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5	(주)삼천리이앤에스	20	한국전력기술(주)
6	(주)서브윈	21	(주)한샘
7	신세계건설(주)	22	현대건설(주)
8	씨제이대한통운(주)	23	현대로템(주)
9	에스케이텔레콤(주)	24	현대산업개발(주)
10	(주)에스원	25	현대스틸산업(주)
11	(주)에이치에스애드	26	현대엔지니어링(주)
12	(주)농협네트웍스	27	(주)효성
13	(주)엘지씨엔에스	28	LS산전(주)
14	코리아오토글라스(주)	29	SK(주)
15	(주)포스코건설		

※ 기업어음 신용평가 기준 충족 업체(5개사):

(주)에스원,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주)포스코아이씨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한샘

1)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발급현황, 전문건설공제조합, 2018

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준 계약 현황

-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 중 원도급공사 계약금액은 408조 470억 원이며,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은 95조 5,070억원 임
-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준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총 22조 8,100억 원으로, 진행 중인 전체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의 23.9%에 해당 함
- 건수 기준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업체가 하도급준 하도급계약 건수는 9,693건으로 진행 중인 전체 하도급계약 60,568건의 16.0%에 해당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들이 하도급 준 건설공사는 건수로 16.0%, 계약금액으로 23.9%로 나타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공사의 약 24%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은 불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면제 대상 원사업자 업체의 하도급 현황

구분	원도급 규모	하도급 규모	보증 면제 업체의 하도급계약 규모*
건수	41,535건	60,568건	9,639건(16%)
금액	4,080,470억원	955,070억원	228,100억원(23.9%)

*2017년 8월 31일자 기준 시공 중인 공사(1억원 이상, KISCON 공사정보 기준)

3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의 문제점 및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3.1 신용등급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의 문제점

(1)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미흡

- 하도급법상 하도급공사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과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 공사규모가 작거나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하여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및 발주자 직불인 경우에는 대금지급 보증을 면제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 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둘째,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셋째, 법 제14조제1항제2호16)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금지급 보증의무는 면제됨
- 하도급계약 시점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낮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한 것임

□ 1건의 건설공사의 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는 소액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 되는 것은 주로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하도급법령은 원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공사금액을 4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액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2013년 하도급법 시행령의 개정(2013.11.29.)을 통하여 1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을 낮추게 되었음
- 면제 대상 공사의 규모인 1천만원은 건설업의 등록 없이 수행 가능한 금액 수준으로서 경미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고려한 것임
- 5천만원 이하의 하도급 공사 건수가 전체 하도급공사의 22.5%²⁾로서 상당수의 하도급 공사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이러한 소규모 하도급 공사의 경우 대금 미지급 발생률이 높아 5천만원 이하의 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 이러한 하도급법의 시행령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된 공생발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를 2012년 12월 개정하여 시행된 후 이를 뒤 따라 하도급법령이 개정된 것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소규모 수급사업자의 보호 및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하도

2) 2016년 기준 전체 하도급 공사 건수 114,041건중 5천만원 이하의 하도급 공사건수는 25,612건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음, 건설산업정보센터, 2016년, 부록1 참조

급법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서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 왔음. 협력관계 평가결과가 고시 수준 이상인 경우(2012. 12. 05. 삭제),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2014. 02. 06. 삭제), 공제조합의 재산상태 평가결과가 고시수준 이상인 경우(2002. 09. 18. 삭제) 등 3개의 사유가 삭제되었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주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면제기준이 광범위한 것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 정착에 부정적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임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것은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으로 따라서 하도급법상에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 분명 하다고 할 수 있음

- 건설경기의 불황 및 침체 속에 건설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사이행 도중 신용등급이 면제기준 이하로 강등되거나 부도·파산·워크아웃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보호측면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신용등급 면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대하여 하도급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그 사유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대금지급 안정성에 관해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데 분명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대상 기준 중 신용평가등급 면제기준에 대하여는 동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각 부

처 간 운용하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해도, 동일 제도에 관하여 국가 공권력집행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법집행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은 혼란스러울 것임

-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하도급법을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고, 회사채 신용등급 A0 이상에 해당되는 원사업자 대부분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상 신용등급 면제대상 삭제기준이 그 법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의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표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대상 개선 연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개정 및 폐지 시기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일 것 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것	(삭제 2012. 12. 05.)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제 2014. 02. 06.)
3. 삭제 (2002. 09. 18.)	(변동 없음)
4.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으로 개정 시행 2012. 12. 05.)	 1천만원 (개정 2012. 12. 05.)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변동 없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업체의 지급 불능시 연쇄 피해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 또는 내부적 요인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사전에 신용평가 등급이 조정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신용평가기관이 미래를 전망하는데 한계가 있고 신용평가 등급 변동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신용등급이 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적지 않은 건설업체들의 신용등급이 사후적으로 강등된 것을 볼 때 신용등급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대기업도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등 부실화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 할 수 있음. 2017년의 경우 GS건설의 신용평가등급이 A에서 A-로 강등되었으며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도 A에서 A-로 하향 조정되었음
 - 대금지급보증 면제 업체로서 2011년 12월에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고려개발의 경우 관련된 하도급 업체는 229개사로서 하도급계약 금액은 888억원이었음

〈고려개발 워크아웃 결정에 따른 하도급 피해 사례〉
○ 워크아웃 개시 결정일 : 2011. 12. 12. ○ 신용평가등급: A- ○ 하도급 현황 - 하도급 업체수: 229개사 - 하도급 계약건수: 464건 - 하도급 계약금액: 888억원

-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원사업자의 신용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는 원사업자가 부실화 될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 및 경제적 취약 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까지 체불되

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노무자,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체불 가능성이 높아짐
- 전문건설업종별 노무비율을 살펴보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9.5%, 철근콘리트 공사업 36.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37.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종 평균은 약 30%임³⁾

(3)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부도,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확보 어려움

□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부도,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확보가 어려워짐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에 포함된 건설업체도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가 20여 개를 넘기도 했고 보통 10여개 업체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원사업자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하도급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하나의 원도급업체가 부도나면 평균적으로 약 200개의 하도급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약 1,2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분석도 있음⁴⁾.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부도나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지 않더라도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와의 다툼은 발생하고 있음. 수급사업자가 면제대상 업체를 상대로 대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소한 총 미지급 금액은 2018

3)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물가협회, 2016년

4) 대한전문건설협회 내부 자료

년(9월 기준)의 경우 약 440억원⁵⁾으로 면제대상 원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라는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채권은 압류나 가압류에 의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며 법정관리의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하도급대금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짐
- 따라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4)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와 수급사업자의 계약보증 이행 간의 형평성 결여

-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간 계약이행을 상호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은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른 것임
-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부분의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서를 교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음.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이행보증을 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보증 수수료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연간 약 105억원 임(<표 3.2> 참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때 수

5) 분쟁조정협의회의 대금미지급 제소 현황(2018년 9월, 분쟁조정협의회 자료)

- 대금미지급 원사업자: 대림산업(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서브원, 신세계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주)
- 대금미지급 제소 금액 및 건수: 44,031,881,644원, 10건

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아니할 수 있음⁶⁾

-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하도급법에 수급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대항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징후가 나타나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거부 시 하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싶지만,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청구 때문에 계속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높다하여 믿을 수 있다든가, 하도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게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6)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표 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보증현황(기간: 2017.07 ~ 2018.06.)⁷⁾

기 업 명	보증건수(건)	보증금액(백만)	보증수수료(천원)	비고
대림산업(주)	1,470	237,461	2,538,685	
(주)대림코퍼레이션	8	129	316	
롯데건설(주)	1,276	149,806	1,228,616	
삼성물산(주)	1,187	223,473	1,586,326	
(주)삼천리이에스	1	4	5	
(주)서브원	314	15,632	31,456	
신세계건설(주)	285	36,862	160,649	
씨제이대한통운(주)	134	13,240	53,526	
에스케이텔레콤(주)	1	2	5	
(주)에스원	94	529	819	
(주)에이치에스애드	-	-	-	
(주)농협네트웍스	299	4,951	13,127	
(주)엘지씨엔에스	14	1,082	3,026	
코리아오토글라스(주)	-	-	-	
(주)포스코건설	1,022	161,557	1,592,647	
(주)포스코아이씨티	7	526	1,427	
포스코에너지(주)	1	3	5	
(주)포스코캠텍	3	37	7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0	299	687	
한국전력기술(주)	1	3	5	
(주)한샘	10	457	1,135	
현대건설(주)	1,610	172,392	1,572,980	
현대로템(주)	22	1,288	3,601	
현대산업개발(주)	388	56,176	876,070	
현대스틸산업(주)	11	637	5,948	
현대엔지니어링(주)	959	76,263	677,732	
(주)효성	78	9,494	154,017	
LS산전(주)	10	85	111	
SK(주)	3	15	15	
합계(29개사)	9,218	1,162,405	10,503,008	
총합계(전체)	166,778	4,876,750	31,002,039	

※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속조합원의 보증이용율은 약 70%내외로 30%는 서울보증보험 등 이용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는 조합 보증수수료대비 약 2.5배 높음(출처: 서울보증보험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실적금액대비 보증수수료금액을 비교, 전문건설공제조합, 2017년)

7)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발급현황, 전문건설공제조합, 2018

3.2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 폐지에 따른 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의 고려 사항

- 비용-편익 분석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의 경우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므로 29개의 지급보증 면제 원사업자중에 1개의 업체⁸⁾가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에 대하여 분석함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태는 유동성 악화에 따른 미지급, 부도,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상태인 경우임
- 하도급 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32.1%의 수급사업자가 적정한 하도급공사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 50.3%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현금 수령 비율을 모르고 있는 상황임⁹⁾. 따라서 하도급대금 보증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 금액의 규모 산정시 선급금은 고려치 않음

□ 면제대상 원사업자의 추가되는 비용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 면제대상 원사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경우 정확히 계산되어 공개된 바는 없음
 - 대한건설협회에서 2017년 1월 신용평가등급이 A0에서 A-로 하향 조정된 GS건설의 지급보증 수수료 발생비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면제대상 업체의 비용을 추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한 금액은 150억원 임
 - 통상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으로 높은 업체는 A- 등급의 업체보다 보증수수료가 할인되므로 실제로는 150억원 이하 일 것으로 추정됨
 -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발주자가

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업체중 고려개발의 워크아웃이 2011년 12월에 개시됨. 2011년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업체는 33개사였으며 이중 1개사인 고려개발의 워크아웃이 개시됨

9) 전문건설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입찰시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면제대상 업체가 2016년 수행한 건설공사중 민간공사의 비율이 약 73%¹⁰⁾로 원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시한 150억원을 전액 인정하더라도 150억원의 77%인 109.5억원 이하로 볼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4개월¹¹⁾ 미지급시 보증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금액 규모: 2,624억원

- 면제대상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규모(A) : 228,100억원¹²⁾
- 1개 원사업자의 평균 하도급 계약 규모(B) = $A \div 29\text{개사(면제 대상 업체수)}$
= $228,100\text{억원} \div 29\text{개사}$
= 7,866억원
- 1개 원사업자의 월평균 기성금 지급 규모(C) = $B \div 12\text{개월}$
= $7,866\text{억원} \div 12\text{개월}$
= 656억원
- 1개 원사업자의 4개월분 기성금 지급 규모(D) = $C \times 4\text{개월}$
= $656\text{억원} \times 4\text{개월}$
= 2,624억원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하도급지급 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참여할 경우의 편익(2,624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보다 큼

10) 2016년 실적신고 기준, 대한건설전문협회

11)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는 일반적으로 2개월이며 수급인은 통상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 되었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청구를 고려함

12) KISCON 공사정보 기준, 2017년

〈표 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업체의 지급보증에 따른 추가비용과 편익 발생 유무

구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추가 비용	○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수수료)	△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음)	× (현행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보증비용은 없음)
편익	○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발주자에게 주는 편익

○ 금전적 편익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하도급공사의 계약이행이 지연될 경우 공기의 증가에 따른 목적물의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목적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됨

○ 공공 발주자의 책임성 이행 강화

- 공공 발주자는 민간과 다르게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발주하므로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공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합당한 대가로 100%의 공사비를 지급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수급사업자와 건설근로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지급 받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 공공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와 건설 근로자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 집행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의 이행을 강화 시킬 수 있음

○ 발주자의 행정부담의 경감

- 원사업자의 부도시,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하도급자 및 자재 공급자들을 상대하여 그들의 청구권 상태를 파악함
- 다수의 수급사업자 및 건설근로자로부터 공사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막대한 행정 부담을 회피할 수 없어 발주자가 유보한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법적 위험에 시달려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상당한 행정업무 부담이 보증회사로 이전되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민원 처리를 위해 별도의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음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국가적 이익 증대

-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인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아짐
- 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임금체불은 생계수단의 불안, 사회적 불만의 심화에 따른 집단행동의 표출 등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수급사업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건설노무자의 임금지급 안정성을 높임으로서 취약계층에 의한 사회불안 요인 제거 가능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편익

○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 향상

-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인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건실한 회사 경영 가능성이 높아짐

- 건설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체불 불안 해소
 - 수급사업자 보다 더욱 영세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노무자와 영세 자재·장비 업자의 체불 방지 가능
 - 건설노무자의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의 보장 가능성이 높아짐

4 개선방안 및 결언

(1) 하도급법상의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규정 삭제

-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할 유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부도 등에 이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것임
- 건설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014년 2월에 삭제되었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기준이 삭제된 사유는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공사이행도중 신용평가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 중에도 유동성 악화로 인한 지급불능, 부도, 파산,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 하도급법은 2013년 11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면제기준을 종전 회사채 등급 A-에서 A0 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지급보증이란 만일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바, 신용평가등급이 A0이상인 원사업자는 지급불능,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지급보증제도의 본래의 기능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규정인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참여할 경우의 발생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와 지급보증을 의해 보호되는 평균 하도급대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호되는 하도급대금(2,624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가 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원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은 원사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 수준보다 낮아 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¹³⁾

(2) 결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경제 위기 상황 또는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자재·장비업자의 존속 및 건설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는 주요한 제도이므로 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임
-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축소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함

13)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부록

종합건설 원도급 규모별 하도급 현황(2016년, 단위: 십억)

하도급규모	값	1억 미만*	1억 ~3억	3억 ~4억	4억 ~5억	5억 ~7억	7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300억	300억 ~500억	500억 ~1000억	1000억 이상	총계
합계	건수	259	11,910	3,414	2,963	4,393	4,720	9,214	2,551	2,167	1,260	334	354	276	43,815
(종합건설 원도급 받은 경우)	금액	16.7	2,196.40	1,176.90	1,332.30	2,608.00	3,954.90	15,759.40	9,927.70	15,180.90	21,471.60	12,800.80	24,760.50	55,987.90	167,174.20
종합	건수	445	4,054	1,968	1,947	3,963	5,429	22,543	12,743	17,963	17,073	5,834	9,603	10,476	114,041
건설이	금액	1.6	250.6	179.2	189.9	409	617.3	3,875.30	3,379.30	6,487.40	9,996.50	5,341.50	11,722.50	22,428.10	64,878.20
하도급	건수	433	1,775	692	762	1,592	2,159	6,136	2,460	3,148	3,126	851	1,384	1,094	25,612
을 준	금액	0.9	49.1	17.7	19.7	42.2	61.3	178.9	70.4	75.1	70.8	19.8	31.3	28.3	665.4
·	5천~1억	12	1,623	550	465	904	1,221	5,372	2,476	2,789	2,072	528	824	816	19,652
·	1억~3억	0.7	116.1	40.4	33.4	65.2	87.6	388.4	182.7	206.1	151.8	38.4	60.7	59.8	1,431.30
·	3억~5억		656	716	663	1,223	1,581	7,309	4,429	5,673	4,626	1,370	1,759	1,593	31,598
·	5억~7억		85.4	118	116.6	210.5	266.2	1,274.20	793.2	1,033.50	850.8	264.4	334.6	299.1	5,646.50
·	7억~10억			10	57	228	358	2,179	1,494	2,481	2,046	787	1,288	929	11,857
·	10억~30억			3.2	20.2	82.4	137.9	840.6	576.6	964.4	804.7	306.8	505.2	369.5	4,611.30
·	30억~50억					16	99	817	721	1,256	1,248	464	825	827	6,273
·	50억~100억					8.7	56	474.9	425.7	740.3	742.1	273.2	487.7	493.2	3,701.70
·	100억 이상						11	493	607	1,051	1,114	428	802	941	5,447
·							8.3	405.9	505.4	883.5	931.6	358.2	668.9	788.7	4,550.60
·								237	545	1,489	2,283	986	1,820	2,364	9,724
·								312.5	788.1	2,284.70	3,880.90	1,694.90	3,158.90	4,127.80	16,247.90
·									11	66	422	222	405	744	1,870
·									37.3	240.8	1,593.80	851	1,566.10	2,876.90	7,165.80
·										10	119	168	321	664	1,282
·										59	757.6	1,117.90	2,226.90	4,661.90	8,823.20
·											17	30	175	504	726
·											212.4	417.1	2,682.20	8,722.80	12,034.5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방안

2019년 1월 31일 인쇄

2019년 1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서 명 교

발 행 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 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064-7

인 쇄 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

